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 제2026-7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24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1. 공고사유 :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 2026. 6. 24. ~ 2026. 7. 7.
-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후정	1975.○.13.	0178250274100000142	₩9,27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 2 길
2	이후정	1975.○.13.	0178230274100000209	₩3,571,44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 2 길
3	신동술	1968.○.20.	0178210274100003565	₩2,372,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 13 길
4	(주)크레딧 컴퍼니	210111-0140740	0178200274100007600	₩5,752,5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 4. 문의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5)
- 5. 공고내용 :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